



Newsletter

2025 년 3 월호

제목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규 · 판례

○ 국세청

-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3. 25

Deloitte Anjin LLC
Japanese Services Group(JSG)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4 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 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 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 의 2)

<개정안> 7 개 분야 54 개 시설 ⇒ 7 개 분야 58 개 시설

- (신규) 4 개

분야	세부기술
이차전지(1 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디스플레이(2 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1 개)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확대) 1 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1 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

<개정안> 14 개 분야 182 개 시설 ⇒ 14 개 분야 183 개 시설

- (신규) 1 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1 개)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 (확대) 1 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1 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조특칙 별표 6, 별표 6 의 2)

<개정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시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2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 구체화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조특칙 §7)

<개정안>

- 50%를 초과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에 투입하는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하여 R&D 공제율 적용
-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이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을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입시간으로 간주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조특칙 §7)

<개정안>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의 범위 확대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칙 §8 의 8)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소부장 품목 한정)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추가

<개정이유> 경제안보품목 생산기반 강화 지원

■ **법인세법**○ 공동경비 부담기준 합리화(법인칙 §25②)

<개정안>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부담 기준 추가

- 공동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
-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고정비) 소유자분비율, (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

<개정이유>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

○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⑩)

<개정안>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승계 가능 주식등의 범위 확대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 2)

<개정안>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5 년 ⇒ 3 년)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소득세법**○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소득칙 §83 의 5)

<개정안>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10%p) 미적용 기간 확대(2 년 ⇒ 5 년)

<개정이유> 빈집 문제 해소 지원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부가칙 §47)

<개정안> 이자율 하향(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7 의 2)

<개정안>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하는 범위 확대

- 「보험업법」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 변동분 제외)
- 해약환급금준비금(「법인세법」 제 32 조 제 1 항)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비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 합리화

■ 종합부동산세법

- 중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중부칙 §4)

<개정안> 합산배제 기간 한시 연장(5 년 ⇒ ‘25.1.1. ~ ‘26.12.31. 중 납세의무 성립분은 7 년)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대상 자료 추가(국조칙 §2)

<개정안> 제출대상 자료로 정상가격 입증서류 추가(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 의 3)

<개정안> 이자율 하향(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 관세법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 의 3)

<개정안> 이자율 하향(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 개의 세법개정안이 '25.2.27.(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 대기업, 중견기업: 15% ⇒ 20%
 - 중소기업: 25% ⇒ 30%
 <개정이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 '24·'25 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조특법 §24)
 <개정안> '24·'25 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업 규모별 공제율 차등)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
-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조특법 §10)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개정이유>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지원 강화

■ 법인세법

- 중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법률 제 19193 호 법인법 부칙 §16)
 <개정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26.12.31.까지 연장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 의 5①)
 <개정안>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추가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국기법 §85 의 7, §85 의 8 신설)
 <개정안>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 일)을 부여
 - (부과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 일당 1 일 평균수입금액의 1 천분의 3 이내,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 일당 5 백만원 이내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예규 · 판례

[국세청]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217, 2024.8.29.)

■ 질의

- (질의 1) 질의법인이 투자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방형 금형 중 단발 및 연발 금형으로, 여러 공정의 금형을 동시에 제작하고, 통상 5-10 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
- (질의 2) 질의법인이 제작하여 국내외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내 생산 공장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프레스 공정을 위하여 금형을 직접 보유하고 사용하기도 하며, 질의법인에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금형도 제작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질의법인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하청업체는 질의법인 소유의 금형을 활용하여 질의법인을 위한 부품만 제조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부품의 형태, 사이즈 등이 자동차 모델별로 전부 달라, 다른 제조업자를 위한 부품을 질의법인의 금형으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 질의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apanese Services Group(JSG)

저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세계적인 조직인 Deloitte Touche Tohmatsu LLC(이하 “DTT” 또는 “딜로이트”)의 Member Firm 으로서 DTT 의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다른 Member Firm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고객의 Needs 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법인은 DTT 의 일본기업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조직인 JSG(Japanese Services Group)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조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 는 일본어에 의한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SG 의 서비스 내용은 웹사이트 ([한국의 일본계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Seo, Jung Wook / TEL 02-6676-1871 / juseo@deloitte.com

Lee, Ji Eun / TEL 02-6138-6680 / JiEunLee1@deloitte.com

감사합니다.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안진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